

<의안번호 제2007- 40호>

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. 11. 6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. 11. 6.

2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2006. 12. 30) 및 공유재산관리기준(행정자치부, 2007. 3. 9)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일치시키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삭제(안 제29조).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음
- 나. 제32조 중 “영 제35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5조”로 변경(안 제32조).
 -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과 혼돈을 방지하기 위함
- 다. 제39조제1항 중 “영 제27조제8항”을 “영 제42조”로 변경(안 제39조).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관련 조문 변경

라.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매각기준 명시(안 제40조).

-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 건물에 대하여는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제한

-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

- 매각시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음.

- 군의 읍·면지역에서는 1,000제곱미터 이하

마. 분수림을 규정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7조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삭제(안 제44조)

바.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(안 제64조)

- 총보상금 : 1,000만원 → 3,000만원

- 필지별 보상금 : 100만원 ~ 200만원 → 300만원 ~ 600만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6항, 제47조, 제84조, 「공유재산관리기준」(행정자치부)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7. 9. 10 ~ 9. 30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('06. 12. 30)되고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('07. 3. 9)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조문 정비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증액 등 공유재산의 소유·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 발취

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]

제31조 (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(이하 이 항에서 "입체이용저해율"이라 한다)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,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. <신설 2006.12.30>

제47조(분수림의 설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분수림(分收林)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일부개정 2006.12.30. 대통령령 제19816호] 로 조문삭제

제84조 (은닉된 **공유재산**의 신고에 대한 보상)

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**공유재산**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6.12.30>

③은닉된 **공유재산**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제1항의 경우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공유재산관리기준(2007. 3. 9. 행정자치부)]

4. 공유재산의 처분관리

4-1.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

마. 매각기준

3)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

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,000㎡, 시이외의 지역에서는 2,000㎡ 이하로서 1981.4.30.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(「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)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(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㎡를 한도로 한다)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음. 다만, 공유재산이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항의 1,000㎡ 또는 2,000㎡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개별 건물별로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면적(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㎡를 한도로 한다)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음